

- **(개요)**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*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

*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% 이상 감소 또는
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

- **(지원요건)** 고용유지조치 및 이후 1개월까지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 이행,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* 등

* 단, 법령기준 충족을 위한 채용 등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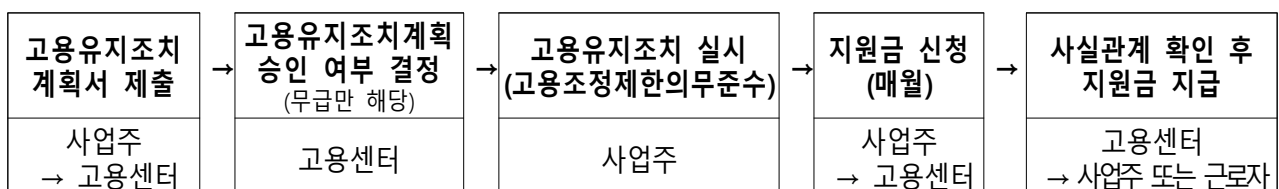
구분	실시 요건	지급하여야 하는 금품 수준
유급	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% 이상 단축	고용유지조치 기간 평균임금 70% 이상 의 금품 지급
무급	① 사전 노동위원회 승인 , ② 30일 이상 실시, ③ 실시비율: ▲50% 이상 (5명~19명), ▲10명 이상 (20명~99명), ▲10% 이상 (100명~999명), ▲100명 이상 (1,000명 이상)	고용유지조치 기간 평균임금 50% 미만 의 금품 지급 (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포함)

- **(지원내용)**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

* 단, 무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50%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**대상 근로자에게 지급**

구분	유급 고용유지조치 (사업주 지원)		무급 고용유지조치 (근로자 지원)	
	지원수준 (사업주 지급금품 기준)	지원한도(기간)	지원수준	지원한도(기간)
일반업종	• 우선지원 2/3 • 대규모 1/2 또는 2/3* * 단축률 50%이상	• 1일 68,100원 (연 180일)	• 평균임금의 50% 범위내에서 결정	• 1일 68,100원 (재직기간 중 최대 180일)
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	• 우선지원 8/10 • 대규모 6/10 또는 7/10* * 단축률 50%이상	• 1일 68,100원 (연 180일)		
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	• 우선지원 9/10 • 대규모 2/3 또는 3/4* * 단축률 50%이상	• 우선지원 1일 7만원 • 대규모 1일 68,100원 (연 180일)		

- **(지원절차)**



○ 유급 휴업 및 휴직, 무급 휴업 및 휴직으로 구분되어 있던 지원유형이 고용유지조치로 통일되는데,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개정된 법 조항(영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)은 **5.12. 이후 고용 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** 적용됨

- 따라서 **시행 전에 계획신고서를 제출**한 사업주는 변경계획신고 및 지원금신청서를 5.12. 이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이 아닌, **변경 전 법이 적용***됨

*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(제2,3,4조) 경과조치 참조

○ 개정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기한은?

○ 유급의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, 무급의 경우 개시한 날부터 조치기간이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,

- **제척기간 도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**

* (예시) 유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이 '26.5월(실시기간: 5.13.~5.31)에 이루어진 경우
⇒ 5월 고용유지지원금은 **'26.8.31.까지** 신청하여야 함

○ 계획에 미달하여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지원금 산정 방법은?

○ 기존과 동일하게 판단

- 계획을 초과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, **계획된 내용대로** 지원

- 계획에 미달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, **실시한 내용대로** 지원

* 단, 대상자 수, 조치기간, 지급 금품의 이행률이 어느 하나라도 **50% 미만인** 경우 해당 월은 **부지급**

○ 유급 휴업·휴직 유형 통일 후 단축률 산정은?

- 개정법이 시행되는 5.12. 이후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려는 사업주는 **역에 따른 1개월 단위(유급휴업과 동일)**로 계획신고서를 **매월 신고**하여야 함
- 월 중간에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일 실시 예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고용유지조치 단위기간의 마지막 날로 보고, **월력상의 1개월을 단위로 단축률을 산정**

* (예시) 5.13.~6.12.(1개월) 동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

고용유지계획서 신고기한 ⇒ '26.5.12. 이전(1회차), 5.31. 이전(2회차)

소정근로시간 20% 감축 여부 판단을 위한 고용유지조치 단위기간

⇒ 1회차: 5.13~5.31/ 2회차: 6.1~6.12 (**1·2회차 각각 20% 이상 감축**)

- ※ 역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20%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므로, 달력상 월 중간에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실시예정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로 보고 있으며,
- **피보험자별로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 대비 20%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.**

* (예시) 고용유지조치를 5.13.~6.12. 기간 동안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

(1회차) 5.13.~5.31. (5.12.까지 신고)

→ **달력상 5월(5.1.~5.31.) 근로시간 단축률이 20%이상이어야 함**

(2회차) 6.1.~6.12. (5.31.까지 신고)

→ **달력상 6월(6.1.~6.31.) 근로시간 단축률이 20%이상이어야 함**

□ 사업내용

-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*가 해고 대신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안정 지원

*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% 이상 감소 또는
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

□ 개편내용

①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(사업주 지원)

- 휴업, 휴직 구분을 전제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원 요건을 “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”으로 통일

구분	현 행	개 정 후
휴업	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% 초과 단축	▶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% 이상 단축
휴직	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	

(예시) 근로자 A~E를 피보험자로 둔 회사에서 휴업을 사용하는 경우

	A(휴업조치)	B(휴업조치)	C	D	E
소정 근로시간	22일×8시간	22일×8시간	22일×8시간	22일×8시간	22일×8시간
단축 후 근로시간	22일×6시간	22일×6시간	위와 동일	위와 동일	위와 동일

[현행] 총근로시간 단축률*이 20%를 넘지 않으므로, 지원 불가

* $(880h - 792h) \div 880h = 10.0\%$

[개정후] A, B의 소정근로시간 단축률이 각각 20% 이상이므로, **A와 B를 대상으로 지원 가능**

②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(근로자 지원)

- 휴업, 휴직 구분을 전제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원 요건을 “노동위원회 승인”으로 통일

구분	현 행
무급 휴업	① 30일 이상 휴업 ②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
무급 휴직	①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·휴직 ② 30일 이상 휴직 ③ 근로자대표와의 합의



개 정 후
①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②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

※ 무급휴업·휴직의 최소실시인원도 통일

▲50% 이상 (5명~19명), ▲10명 이상 (20명~99명), ▲10% 이상 (100명~999명), ▲100명 이상 (1,000명 이상)

③ 지원금 신청기한 연장(1개월 → 3개월)

구분	현 행
유급	(휴업) 역월상 고용유지조치 실시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(휴직)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 기준으로 1개월 이내
무급	개시한 날부터 조치기간이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



개 정 후
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
개시한 날부터 조치기간이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

④ 지원요건 판단시 최근 경영상황 반영(매출액 감소 요건)

구분	현 행
매출액 감소 요건	기준달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15%이상 감소 (무급은 30% 이상 감소)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주 (무급은 20% 이상 감소 추세)



개 정 후
현행과 같음
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(무급은 20% 이상 감소) 추세에 있는 사업주

(예시)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A회사에서 7.1.부터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실시

- ▶ 기준달은 6월이 되며,
- ▶ ①'25.12월~'26.2월(월평균 매출액: 100억) → ②'26.3월~'26.5월(월평균 매출액: 90억) → ③6월(매출액: 80억)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 지원대상